비상경제장관회의 22-3

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

2022. 6. 19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 . 최근 물가동향 1
Ⅱ. 추진과제 2
1. 공공부문의 물가인상요인 흡수2
2. 유가상승 부담 경감 3
3. 농축수산물 수급·가격변동 적극 대응4
[참고1]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6
[참고2]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7

Ⅰ. 최근 물가동향

- ① (해외)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·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 등으로 40년 만에 최고수준
 - 에너지·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측 상방요인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상승률은 40년만에 최고 수준*을 기록중
 - * ^①(美) <u>5월 8.6% ['81년 이후 최고수준]</u> ^②(유로존) <u>5월 8.1% [통계작성<'97년> 이후 최고]</u> ^③(英) <u>4월 9.0% ['82년 이후 최고]</u> ^④(OECD) <u>4월 9.2% ['88년 이후 최고]</u>
 - 특히 3월(8.5%)을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하강(peak-out)이 예상되던 미국 물가는 유가상승 영향* 등으로 5월(8.6%) 고점을 갱신
 - * 두바이유(\$/B): ('22.1)83.5 (2)92.4 (3)110.9 (4)102.8 (5)108.4 (~6.16)115.4
 - → 전세계적으로 **공급發 상승압력이 지속·심화**되면서 **엄중한 물가여건이 장기화**될 수 있다는 **우려** 제기
- ② (국내) 국내 소비자물가도 대내외 공급측 상방압력이 가중되면서 5월 물가(5.4%)는 14년 만에 5%대 상승률을 기록
 - * 소비지물가(전년비, %): ('21.10) 3.2 (11) 3.8 (12) 3.7 ('22.1) 3.6 (2) 3.7 (3) 4.1 (4) 4.8 (5) 5.4
 - 유가 및 곡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 석유류와 식품물가가 지속 상승했으며 축산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도 오름세 가시화*
 - *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(4월→5월, 전년동월비, %) (석유류) 34.4 → 34.8 (가공식품) 7.2 → 7.6 (외식) 6.6 → 7.4 (농축수산물) 1.9 → 4.0

한국 소비자물가 추이

<u>미국 소비자물가 추이</u>





- ◇ 최근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
 - □ 감내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공급측 물가압력의
 □ 파급영향을 조속히 억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대응 필요

Ⅱ. 추진과제

♦ 주요 추진방향 ♦

- **1**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원가상승요인을 최대한 흡수
- ② 유가상승의 국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유가 부담 경감
- ❸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총력

1. 공공부문의 물가인상요인 흡수

- ① (공공요금 등)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원칙하에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여력,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
 - 도로통행료(도로공사), 철도요금(코레일·SR), 우편요금(우정사업본부), 광역상수도요금(한국수자원공사), 자동차검사수수료(교통안전공단) 등 공공기관은 동결
 - * 공항시설사용료 감면(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)은 금년말까지 연장
 - 글로벌 에너지 가격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·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
 - ① (자구노력 등) 경영효율화, 연료비 절감, 출자지분 매각,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결정체계 개선 추진
 - ② (발전연료 개별소비세 감면) LNG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(~'22년말), 발전용 LNG·유연탄 개소세율 한시 인하(△15%, '22.8.1.~12.31.)
- ② (지방 공공요금) 지방 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 하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
 - 旣확정분 이외에는 지방 공공요금^{*}을 최대한 동결 추진
 - * 상·하수도요금, 쓰레기봉투료, 시내버스요금, 택시요금, 전철요금 등
 -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와
 광역지자체 간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개최하여 동향 점검
 -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(특교세 110억원)를 지원하여 적극적인 물가안정활동 유도

2. 유가상승 부담 경감

- ① (유류세 추가 인하)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로 인하*(탄력세율 기준,
 30→37%)하는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 절감** 지원(7.1 시행)
 - * 유류세 30% 대비 추가 인하폭(부가세 포함, 원/t): (휘발유) △57(247→304), (경유) △38(174→212), (LPG) △12(61→73)
 - ** 1일 40km, 연비 10km/ 인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(37% 인하 기준): 月 약 36,000원 절감(기존 30%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)
 -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·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
 - * 정유사는 유류세 인하 물량을 전국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, 직영주유소는 즉시 가격 인하 추진 +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 가격 인하되도록 노력
- ② (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)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·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한시 확대(7.1 시행)
 -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,750원에서 1,700원으로 50원 인하
 - (내용)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, 초과분의 50%를 정부가 지원
 - 경유가격이 2,050원/l인 경우, 보조금이 기존 리터당 150원<(2,050-1,750원/l)÷2> 에서 리터당 175원<(2,050-1,700원/l)÷2> 으로 확대
 - ② (대상) 화물 44만대, 버스 2만대, 연안화물선 1.3천대 등 기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수급대상
 - ❸ (한도) 업계 등이 실제부담*하는 유류세분(183.21원/ℓ)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
 - *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'01.6월 유류세분(183.21원/분)으로 동일
- ③ (정유업계 시장점검) 산업부-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
 - 소비자 부담이 부당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**주유업계** 대상으로 **시장교란행위** 등 **현장점검도 추진**
- ④ (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) 유가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국내선 항공유에 할당관세(3→0%) 적용(8~12월)

- 5 (대중교통비 부담완화)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해 소득공제율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 추진
 - 하반기(7.1~12.31)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을
 대폭 상향(40→80%) (※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)
 - (내용) 총급여의 25%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%를 100만원 한도內 소득공제
 - ❷ (범위) 현행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- 시내·시외버스, 지하철, 기차 등
 - **③** (예시) 총급여의 25%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상·하반기 각 80만원 지출시,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 → 96만원으로 상향 <80만원 x 0.4 + 80만원 x 0.8 = 96만원>
 - 보행·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%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* 이용자 수 확대 추진
 - * 대중교통 이용시 어플을 통해 '최초 출발지→승차정류장간, 도착정류장→최종 도착지'간의 도보,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·환급
 - * 이용자수(만명): ('20.12) 16 → ('21.12) 29 → ('22.6) 39 → **('22.12) 45 이상 추진**

3.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·가격변동 적극 대응

- ① (농산물)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해서는 긴급수입,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수급 안정 추진
 - 가격이 불안정한 **감자·양파·마늘** 등은 **비축물량* 방출**(6~7월)로 **시장공급**을 확대
 - * (양파) 1,282톤 도매시장 출하(6.3~, 60톤/일) 및 9,200톤 조기 방출(6월말) (감자) 수입감자 368톤 가락시장 방출(6.15~7.5, 20톤/일)
 - 감자 등의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를 통해 긴급수입 검토
 -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어려운 **배추·무** 등에 대해서는 **출하조절시설**, **채소가격안정제***를 통한 **수급조절 병행**
 - * (출하조절시설) 배추 5.1천톤(7~9월), (채소가격안정제) 봄배추 5.7천톤, 봄무 1.3천톤

- ② (축산물) 유통·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(5만톤)을 신속히 수입*하고,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 추가 +5만톤 증량 추진
 - * 캐나다産 냉장삼겹·목심 등(관세 8.6~22.5→0%, 1,105톤)은 7.1일부터 국내공급 + 기타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사가 수출업체와 협의 발주 등 8월까지 1만톤 내외 수입예정
 -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**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사***를 추진하여 **돼지고기** 가격의 조속한 **안정화** 도모
 - 6월중 50억원 규모 **할인쿠폰*** 사업지원을 통해 **농축산물** 구입에 대한 **가계부담 경감** 및 이와 연계한 **마트 자체 할인 유도**
 - * 농축산물 구매시 유통업체 행사별 1인 1만원 한도 20%(전통시장 30%) 할인 - 6월 적용: 돼지고기, 계란, 고추, 양파, 배추, 마늘, 감자 등 총 24개 품목
- ③ (수산물) 명태가격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기업 대상 원료 구매 자금 융자(추경 200억원) 및 수산물 가격 할인행사* 실시
 - * 6.20~7.6일 대중성어종, 포장회 등 총 30억원 규모 • 온·오프라인: 생협·수협·홈플러스·쿠팡 등 31개 판매처 자체 할인과 연계하여 최대 40% 할인(1인 1만원 한도, 총 20억원)
 - [©]전통시장: 20% 선할인 온라인 상품권 발행(1인 4만원 한도, 총 10억원)
 - 대중성 어종* 등 주요 소비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안 조짐시 비축물량 적기 방출 추진
 - * 고등어·오징어·명태 등 대중성 어종 6종 약 1.9만톤 비축분 활용
 - 면세경유 사용 어업인에게 기준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 연동보조금으로 한시지원*하여 생산원가 경감(추경 239억원)
 - * 유가상승이 수산물 물가상승 압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중 [기준가격] 1,100원/원, [지원기간] 6.1~10.31(5개월), [지원대상] 전국 32,000개 어가
- 4 (식품)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(추경 546억원)은 6월 농식품부-제분업체 약정체결 후 7월부터 집행 추진
 - aT가 7월부터 제분업체 **출고가격을 매월 점검**하여 밀가루 가격인상을 10% 이하로 억제한 업체 대상으로 월별(7~12월) 지원
 - ◇ 全부처는 소관품목에 대해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 강구
 - o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조치들을 지속 발굴하고, 즉시 시행하여 신속한 가격안정 도모

참고 1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내용

- □ (세율) 휘발유·경유·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폭을 현행 30%에서 37%로 확대('22.7.1.~12.31., 6개월)
 - 유류세 30% 대비 **추가 인하폭**(VAT 10% 포함) : 휘발유 △57원/ℓ, 경유 △38원/ℓ, LPG부탄 △12원/ℓ

< 유류세 인하폭 >

(단위: 원/१)

유종	인하 전 탄력세율	30%(현행)		△37%(개정)
휘발유	820	573(△247)	→ (△57원)	516(△304)
경유	581	407(△174)	→ (△38원)	369(△212)
LPG부탄	203	142(△61)	→ (△12원)	130(△73)

- □ (적용기한) '22.7.1 ~ '22.12.31 (6개월)
- □ (기대효과)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**와화*** 및 물가안정화에 기여
 - * 1일 40km, 연비 10km/l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절감액(37% 인하 기준): **月 약 36,000원 절감**(기존 30% 인하 대비 약 7천원 추가 절감)
- □ (향후계획)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* + 신속한 시장 반영 노력**
 - * (6.28.) 국무회의 상정, (7.1.) 공포·시행 추진(_{잠정})
 - **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조속한 시일내에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·정유사 협조를 진행

참고 2

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 인하

<현황>

- □ 현재 **유가보조금 대상**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에게 유가연동 보조금을 **한시적**으로 지원 중('22.5월~9월)
 - 기준가격 초과분의 50%를 정부가 지원하되, 화물업계 등이
 실제 부담*하는 유류세분(183.21원/ℓ) 만큼을 최대 지원한도로 설정
 - *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화물업계 등이 경유 구매시 부담하는 유류세액은 '01.6월 유류세분(183.21원/원)으로 동일
 - 현행 **유가보조금 지급방식(유류구매카드 등)**을 활용하여 유가 보조금 지급 시 유가연동보조금*도 함께 지급
 - * (화물차·버스 등) 석유공사 오피넷(www.opinet.co.kr)의 차량의 등록지에 속하는 "지역별 주유소 평균판매가격"에서 주유받은 직전 주(週)의 평균가격을 적용

(연안화물선) 분기별 유가보조금 신청시 유가연동보조금 함께 신청·지급하고, 단가는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공시하는 전국 평균가격 적용

<변경사항>

- □ 운송·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,750원에서 1,700원으로 인하 (한도는 183.21원/ℓ 동일)
 - * (혜택) 경유가격이 2,050원/ℓ인 경우, 기존 리터당 150원<(2,050-1,750원/ℓ)÷2>에서 리터당 175원<(2,050-1,700원/ℓ)÷2> 으로 확대
 - 국토부, 해수부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여 '22.7.1일부터 시행 추진
 - * (국토부)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,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(해수부)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

담당 부서 <총괄>	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장	김희재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최문성(moonsung@korea.kr)
<공동>	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	책임자	과장	박상영 (044-21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수(soo9439@korea.kr)
<공동>	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	책임자	과장	조용래 (044-215-4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만기 (kmkey8431@korea.kr)
<공동>	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	책임자	과장	김영민 (044-215-4430)
		담당자	사무관	이금석 (gslee0819@korea.kr)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장	이민우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수 (pss3146@korea.kr)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대일 (044-203-5220)
		담당자	사무관	권 준(rnjswns37@korea.kr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홍인기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헌(khnam@korea.kr)
<공동>	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	책임자	과장	박홍식 (044-201-2331)
		담당자	사무관	김철기 (dkkim2611@korea.kr)
<공동>	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심지영 (044-201-4219)
		담당자	사무관	강윤진 (kyj92629@korea.kr)
<공동>	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	책임자	과 장	박진홍 (044-201-4018)
		담당자	사무관	정일웅(jiw92@korea.kr)
<공동>	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	책임자	과 장	변혜중 (044-200-5730)
		담당자	사무관	백정호(w7077@korea.kr)
<공동>	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구도형 (044-200-54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현 (jiihyun77@korea.kr)
<공동>	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	책임자	과 장	한치흠 (044-205-3902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로 (queennlee@korea.kr)